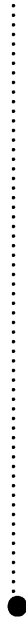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291회 임시회(2017. 3. 16 ~ 3. 3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장주 행정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수·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제29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방분권과 독도수호,
원전 안전과 정책연구방향 설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청정지역 사수, 신학기 준비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보복, 탄핵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 등 정치·외교·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번 현재의 탄핵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갈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김관용 도지사도 대구·경북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대선출마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사님의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 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해빙기를 맞아 각종 건설공사 현장, 노후 건축물,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물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새 학기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경상북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정책 및 민생과 일자리, 4차 산업화 등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도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정책적 제언들이 도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여건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자라나듯이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가득차고
올 한해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차 례

I. 개 황	115
II. 의사일정	117
III. 의안처리	126
IV. 민원처리	127
V. 본회의 보고사항	129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34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34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145
☐ 윤성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6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68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183

부 록

☐ 조	례	안(25건)		193
☐ 예	산	안(1건)		373
☐ 동	의	안(2건)		376
☐ 결	의	안(1건)		386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91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16일 13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9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16일(월) 13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금) 14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폭넓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목)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정책 및 민생과 일자리, 4차 산업화 등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도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며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다음 회기는 제292회 임시회로 2017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7년 3월 16일(목) 13:3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7년 3월 16일 ~ 3월 30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63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4	1	2	2	1	1	1	1	3	2
누 계	333	27	42	43	36	32	34	34	53	32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6(목) 13:50 (제1차)	☐ 안건처리 ○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 윤성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 17(금) 14: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윤중도 의원(농수산위원회)	
3. 30(목) 11:00 (제3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30(목) 11:00 (제3차)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교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위원장(이태식) 인사 - 부위원장(이진락) 인사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7(금) 11:00 (제1차)	☐ 안건처리 ○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1(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창조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소관)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자리민생본부, 대변인 소관)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건강국 소관)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1(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여성가족정책관, 자치행정국 소관) ○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월) 10:30 (제1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관련 사업소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월) 10:10 (제1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월) 10:10 (제1차)	○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월) 11:1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 본부 소관 계속)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1(화) 10:00 (제1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교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7(월) 10:30 (제1차)	☐ 안건처리 ○ 21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소통협력담당관) 소관 - 해양수산정책관·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 농업 기술원 소관 -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공무원 교육원 소관 -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3. 28(화) 10:30 (제2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 의회사무처 소관 -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9(수) 18:50 (제3차)	☐ 안건처리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30(목) 11:50 (제1차)	☐ 안전처리 ○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이태식) 인사 ○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진락) 인사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6(목) 11:10 (제1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공항추진기획단 소관)	

Ⅲ. 의안처리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부의)	처 리 (가+나+다)	의 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35 (579)	35 (579)	35 (563)	34 (496)	1 (65)	0 (2)		0 (8)	0 (8)	
조 례 안	소 계	25 (355)	25 (355)	25 (340)	25 (295)	0 (43)	0 (2)		0 (8)	0 (7)	
	의 회 제 안	15 (192)	15 (192)	15 (180)	15 (156)	0 (24)			0 (5)	0 (7)	
	도지사 제 출	9 (110)	9 (110)	9 (109)	9 (95)	0 (14)			0 (1)		
	교육감 제 출	1 (53)	1 (53)	1 (51)	1 (44)	0 (5)	0 (2)		0 (2)		
규 칙 안		0 (5)	0 (5)	0 (5)	0 (5)						
예산 · 결산		1 (27)	1 (27)	1 (27)	1 (14)	0 (13)					
동의 · 승인		2 (49)	2 (49)	2 (48)	1 (39)	1 (9)				0 (1)	
건 의 안		0 (2)	0 (2)	0 (2)	0 (2)						
결 의 안		1 (24)	1 (24)	1 (24)	1 (24)						
기 타 안		6 (117)	6 (117)	6 (117)	6 (117)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75)	1 (35)	(8)	(2)	1 (17)	(3)	(4)	(4)		(2)
의 회 운 영	(2)	(2)								
기 회 경 제	(5)	(3)					(2)			
행 정 보건복지	1 (12)	1 (6)	(4)		(1)		(1)			
문 화 환 경	(11)	(5)	(4)					(2)		
농 수 산	(3)	(2)					(1)			
건 설 소 방	(32)	(11)		(2)	(16)			(2)		(1)
교 육	(9)	(5)				(3)				(1)
특 별 위 원 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74)	(73)	(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5)	(5)				
행 정 보건복지	(11)	(11)				1
문화환경	(11)	(11)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32)	(31)	(1)			
교 육	(9)	(9)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29건(조례안 25, 예산안 1, 동의안 등 3)

2. 처리안건 : 29건

○ 가결 의안 : 29건(조례안 25, 예산안 1, 동의안 등 3)

3. 의안접수 내용

○ 25건 : 【조례안 25】

○ 1건 : 【예산안 1】

○ 2건 : 【동의안 2】

○ 1건 : 【결의안 1】

연 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비 고
1	의회운영위 (2017. 3. 17)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3	김창규의원 외 8명 (2017. 3. 3)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4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5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6	박성판의원 외 11명 (2017. 3. 3)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7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8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9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연 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비 고
10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조례안
11	도기욱 의원 외 11명 (2017. 3. 3)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2	박정현 의원 외 15명 (2017. 3. 3)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3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4	이영식 의원 외 9명 (2017. 3. 3)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5	황이주 의원 외 14명 (2017. 3. 3)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서서비스 지원 조례안	조례안
16	이태식 의원 외 11명 (2017. 3. 3)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7	정영길 의원 외 21명 (2017. 3. 3)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
18	조주홍 의원 외 11명 (2017. 3. 3)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조례안
19	이영식 의원 외 9명 (2017. 3. 3)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20	황병직 의원 외 5명 (2017. 3. 3)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조례안
21	황이주 의원 외 13명 (2017. 3. 3)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
22	황이주 의원 외 13명 (2017. 3. 3)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23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4	김창규 의원 외 8명 (2017. 3. 3)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교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조례안
25	교육감 (2017. 3.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6	도지사 (2017. 3.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27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
28	교육감 (2017. 3. 3)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29	의회운영위 (2017. 3. 17)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의안

4. 조례 공포 사항 : 25건

연 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	2017. 3. 31	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897호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898호
3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899호
4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0호
5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1호
6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2호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3호
8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4호
9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5호
10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2017. 4. 17 제3906호
11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4. 17 제3907호
12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7. 4. 17 제3908호
13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09호
14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17. 4. 17 제3910호
15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	2017. 4. 17 제3911호
16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12호

연 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7	2017. 3. 31	도지사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4. 17 제3913호
18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7. 4. 17 제3914호
19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4. 17 제3915호
20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17. 4. 17 제3916호
21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4. 17 제3917호
22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17. 4. 17 제3918호
23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17 제3919호
24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2017. 4. 6 제3895호
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4. 6 제3896호

5.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위원회	일 자	장 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독도수호 특별 위원회	2. 22(수)	울릉도동 부두공원	위원장의 1명	- 시마네현 소위 「죽도의날」 폐기 범도민 규탄 결의대회 - 규탄 결의대회(규탄사, 결의문 낭독) 등
지방분권 추진특별 위원회	2. 21(화) ~ 2. 22(수)	부산광역시 의회	위원장의 5명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 회	3. 7(화) ~ 3. 8(수)	울진군 의회	위원장의 6명	- 원자력 주요시설 운영현황 및 안전실태 현장점검 -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 등
정책연구 위원회	2. 27(월) ~ 2. 28(화)	경기도 (성남, 여주)	정영길 의원 의 6명	- 워크숍 및 현장방문 - 주제발표 및 토론 · 2017년 자연공원정책연구회 추진 계획 · 2017년 경북 환경 주요 계획 - 현장방문 :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신록사
자연공원 정책연구회	3. 6(월)	군위, 칠곡	홍진규 의원 의 4명	- 세미나 및 현장방문 - 주제발표 및 토론 · 팔공산의 범위와 지리적 개관 - 현장방문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팔공산하늘정원

6. 의원 동정

□ 수 상

수 상 자	수여기관	일 자	훈 격
박문하 의원	대한뉴스신문	2017. 2. 28(화)	2017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홍진규 의원	(사)한국신지식인협회	2017. 3. 8(수)	2017 대한민국 신지식인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우리 모두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련의 국정농단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 헌정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져보면서, 이제까지의 국론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단결, 소통의 시대로 진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보수의 새로운 결집과 가치실현을 위해 영남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대권경쟁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양 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군의 당면한 문제 등 몇 몇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부 내륙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100여 년 전 경부선 철도노선이 결정될 당시 충청도 공주와 청주지역의 보수적인 유림들은 철도선 통과를 격렬히 반대한 나머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는 양 도시의 가운데인 허허벌판이던 대전으로 변경되었고, 당시 최첨단 교통수단이었던 철도가 모두 대전에 집중됨에 따라 대전은 중부권 거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주 유림의 반대로 경부선 철도노선이 왜관으로 변경된 탓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발전 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바람에 고령·성주지역이 아직도 농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철도가 얼마나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해운과 더불어 국가 물류유통의 대동맥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따라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 내륙선 철도 부설사업은 고령·성주 등 서남부 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적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하반기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진주, 거제 등을 잇는 181km 연장에 4조 7000억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고령, 성주, 합천군이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래 노선이 지나가는 9개 시장·군수들이 중앙부처 방문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후 12월 26일 관련 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2월에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나,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하반기 착수사업으로 밀려나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낙후된 경북의 서남부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성주와 고령읍 지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경부선·

경북선 등과 연계함으로써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하고, 나아가 남부내륙철도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남부 내륙선 철도의 조기건설을 재차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유지인 성주와 고령지역 중간 역사 유치에 대하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 달성군 다사~고령 다산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정 고령보 우륵교 통행과 관련하여 달성군의회에서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불가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달성군은 4대강 정비사업 당시 친수구역 확보로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 아크(The ARC)’, 먹거리타운, 유람선 운행과 많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고령군은 그 당시 친수구역 미확보로 체육시설조차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한 고령군에서는 강정 고령보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걸로 생각해서 우륵교와의 연결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 건설하였습시다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친수구역 확보에 노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셈이 되었습니다.

강정 고령보 사진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정비사업 후 2차로 교량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곳은 유일하게 강정 고령보, 우륵교 밖에 없습니다.

대구 다사에서 고령 다산 간 도로개설 일명 ‘곽촌대교’ 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한 강정 고령보를 이용한 차량통행을 대구시와 달성군이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2014년 9월 11일 국민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달성군수, 고령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킨 사업입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 걷고 나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과 중재안에 대해서 대구시와 달성군은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형상입니다. 당시의 합의안과 중재안이 일시적인 민원 무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과 대구시장, 고령군수, 달성군수 등 각 기관의 대표자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군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엄청난 거리를 둘러서 가야 하고 특히, 지척에 있는 계명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곧 들어설 ‘동산의료원’ 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년 넘게 진행되지 않고 표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그 당시 합의한 기관들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예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강정
고령보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달성군 현풍면과 연결하는 연장 650m의 ‘박석진교’의
경우 인근 테크노폴리스와 구지공단 등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공장들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직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없는 단순 왕복 2차로 교량으로서 몇 해 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보수공사가 진행
된 바 있습니다.

‘박석진교’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차로 교량입니다.
조속히 4차로 교량으로 신설·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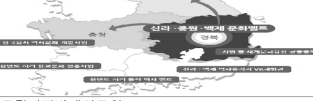
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4차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여부 등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가 이전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대구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경북시대를 여는 2017년, 도지사께서는 도정시책 방향으로 “차별과 격차 줄이기”를 맨 처음 말씀하셨는데 차별과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를 슬라이드를 통해 잠시 보시겠습니다.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경상북도)

프로젝트 명	주요내용	핵심사업
① 글로벌 신소재 산업벨트	• 위 치 : 경북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25 • 사 업 비 : 2조 5천억원 • 핵심사업 : 3개 사업	
② 환동해 해양자원 클러스터	• 위 치 : 동해안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 업 비 : 1조 • 핵심사업 : 5개 사업	
③ 미래 농생명 융복합벨트	• 위 치 : 경북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 업 비 : 1조 • 핵심사업 : 7개 사업	
④ 국가첨단 가속기벨트	• 위 치 : 동해안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 업 비 : 1조 5천억 • 핵심사업 : 6개 사업	• 가속기 신약프로젝트 • 2단계 양성자 가속기 • 양성자가속기 산업융합지원센터 • 방사광가속기 첨단의료복합타운 • 동해안 R&D특구 • 가속기 첨단부품소재 특구
⑤ 백두대간 프로젝트	• 위 치 : 백두대간 권역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 업 비 : 1조 5천억 • 핵심사업 : 7개 사업	

프로젝트 명	주요내용	핵심사업
⑥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 위 치 : 경북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8 • 사 업 비 : 8조 • 핵심사업 : 6개 사업	
⑦ 창의지식서비스 벨트	• 위 치 : 경북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3 • 사 업 비 : 1조 5천억 • 핵심사업 : 8개 사업	• 정색기술융합센터 • 지식서비스 비즈니스센터 • 글로벌 융합디자인지구 •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 K-Beauty 화장품특화단지 • 글로벌 K-뷰티 기술교육센터 • 확장풍효능임상연구센터 • 천연물바이오소재산업화학연구센터
⑧ 국방군수 클러스터	• 위 치 : 구미, 포항, 김천, 영천 • 사업기간 : 2016 ~ 2024 • 사 업 비 : 1조 5천억 • 핵심사업 : 7개 사업	
⑨ 신라, 중원, 백제 문화벨트	• 위 치 : 경북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5 • 사 업 비 : 1조 • 핵심사업 : 5개 사업	
⑩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 위 치 : 경북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24 • 사 업 비 : 1조 • 핵심사업 : 7개 사업	• 국립지진방재연구원 •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 사회안전서비스전문인력양성원 • 국립 외상후 스트레스치유센터 • 국가특수재난 트레이닝센터 •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 119안전체험관

이 자료를 보면 고령, 성주, 칠곡 등 서남부권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과 동시에 발전 축마저도 북부권역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과 환동해시대를 통한 북부권과 동해안 발전 축에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 주민들은 도청과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서남부권역은 대구 인근에 위치하여 대구·경북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차별과 격차 없는 경북을 위해서도 서남부권역 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고령을 포함한 서남부권역의 발전계획을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발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지역소비자에게 싼값에 공급하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착한 소비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 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상설판매장으로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도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7개소, 전북 15개소, 충남 14개소, 경남 12개소, 전남 8개소였으나 경북은 5개소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3농 혁신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3년 만에 5개소에서 35개소로 늘어났으며, 2016년 매출액이 326억 원을 넘어 2015년 206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안전과 가격안정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적극적이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로컬푸드 육성계획과 수립, 직거래 활성화, 조례제정 등의 관련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님께서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시다라는 행정 부지사께서 대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번영과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과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들도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민중심의 도정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공직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내 유관기관·단체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신청사가 안동·예천으로 이전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신청사 개청 이후 최근까지 방문객 수는 약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전통 한옥양식으로 전통미를 살리고 있는데다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청사 주변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을 비롯하여 병산서원, 부용대,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 유교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어서 문화관광과 현장견학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최우수등급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건축물과 1등급짜리 초고속정보통신과 지능형 건축물,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시설 등은 국내 최고의 스마트 녹색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이렇게 신청사가 우수한 시설과 주변의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청의 면모가 제대로 서고,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 정착하기에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기반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이전이며,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은 신도시 조성 초기 1년~3년 사이에 유관기관·단체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신도시로 이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 성격이 짙은 기관·단체들이 이전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신도시 조성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되어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입에도 실패하여 적정 인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이어져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도시 자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 신도시에는 병원 하나 없고, 약국 하나 없고, 변변한 마트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유관기관·단체 이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219개 유관기관·단체 중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는 138개입니다. 이 중 신도시 이전 희망 유관기관·단체는 전체 59%에 해당하는 8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단체는 금년 말까지 이전 예정인 16개 기관·단체까지 합쳐 모두 32개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0개소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내지 2019년 이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유관기관·단체들이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토지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토지 분양가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 본 결과 신도청 이전지의 토지보상가는 평당 평균 10만 2000원인데 조성원가는 102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 예정가는 549만 원이지만 낙찰가는 918만 원이고, 특화상업용지의 예정가는 405만 원이지만 낙찰가는 683만 원입니다. 상업업무지구와 특화상업용지 모두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약 1.7배나 높게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예정가가 150만 원인데 비해 실제 평균 낙찰가는 194만 원으로 130%나 높았습니다.

신도시 토지분양으로 가장 혜택을 입은 수혜자는 바로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예상가부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분양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이 대거 환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잉여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여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랜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바뀌었고,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매출 실적의 99%가 바로 신도시 토지분양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높은 분양가격은 유관기관·단체의 이전과 외지인들의 신도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이전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신도시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적정인구를 갖게 하여 신도시가 행정복합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는 138개소이고, 이 중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82개소입니다. 82개소 중 23%인 32개소는 금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24개소는 2018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26개소는 201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이전을 계획하는 26개 유관기관·단체는 실제로 이전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유관기관·단체가 신도시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격은 신도시 조기 조성 상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분양가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상북도의 중국 마케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대구·경북은 상생 협력을 통해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탈 수도권을 선도하기 위해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양 시·도는 「방문의 해」 선포식, 중국 현지 붐업 이벤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여행 등 7개의 공동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드 배치 발표와 경주 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북을 다녀간 중화권 관광객은 2015년 대비 45% 증가한 32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했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체감도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실례로 여행사와 지원금에 의존하고, 실제 대구시가 성과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일부 여행사는 경북도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최소 조건에 맞춰 경북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월영교-숙박-조식-하회마을’로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맞춘 뒤 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이 짧고, 1인당 소비액은 5~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상북도는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가 최고의 홍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원금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구소재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위주로 쇼핑을 하다 보니 경북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관광객유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 등 교통인프라와 대구그랜드면세점, 동성로 등 쇼핑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대구그랜드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이 2015년 243억 원에서 작년 348억 원으로 약 43% 증가하는 등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구와 경북이 의기투합하였지만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을,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구·경북방문의 해 기간 동안 도내 우수한 자연자원과 세계문화유산들은 대구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역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사드정국에서 대중국 마케팅 방향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정부는 작년 4분기부터 한류콘텐츠 유통금지, 단체관광객 20%를 인위적으로 감축하고,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는 등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연일 감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3월 15일 어제부터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끊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저급한 보복조치가 작년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양 시·도가 쏟아부었던

마중물이 사드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도차원의 보다 철저한 대응이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동남아 관광유치 등을 포함하여 외래 관광객 시장 다변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드보복 조치가 항구적이 아니라는 점, 중국 해외여행자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에도 해외여행 수요자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외래 관광객 다변화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광산업은 유행의 변화속도가 빨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북관광이 도약하기 위해 깊은 정책적 고민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와 같이 관광객이 찾아와도 유치 성과에 비해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못 미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체류기간과 소비액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7 등의 소재가 있고, 내년 초에는 강원도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호재와 함께 외래 관광객을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북 관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일비 하지 않는 정중동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경북관광의 대중국 마케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약품판매업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정부는 응급시 비상약품 구입이 어려운 산간오지 등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소화제류, 감기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과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며,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16년 12월 말 현재 도내 전체 의약품판매업소 분포현황을 파악한 바 약국 1,053개, 약방 44개, 약포 8개,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81개입니다.

특히 약국은 물론 약방, 약포는 없으나 의약품취급 특수장소를 지정·운영 중인 곳은 37개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국, 약방, 약포는 물론 의약품취급 특수장소조차 없는 곳입니다. 우리 도내에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곳은

무려 49개면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1년 약사법 개정 당시 33개면, 2012년 47개면과 비교하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9개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예천 6개면, 안동 6개면, 영주와 상주가 각각 5개면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산간오지에 있거나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 노인들이어서 한밤중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약품을 사러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 교통이용 면에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주민들이 응급 시 의약품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의약품취급업소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경북 세상’을 외치고 있는 경북행정이 구현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약국, 약방, 약포, 특수장소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가 없는 곳이 49개면입니다. 앞으로 도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응급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약품 판매업소 취약지역일수록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는데 의약품 판매업소 업종별로 의약품 취급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과 더불어 함께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도정을 구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성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윤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 경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와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론의 분열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성숙한 의식과 민주적인 역량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을 접고 다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조리를 철폐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이고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가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한마음일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복지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복지 서비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복지관련 예산은 2012년도 1조 7,000억 원에서 2016년 2조 5,000억 원으로 5년 새 45% 급증함에 따라 그 업무 역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근 6년간 사회복지관련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27개 부분에 예산이 700억 원으로 기존 사업에 더해 매년 4, 5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예산과 급증한 업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충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를 보면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673명으로 한 명당 평균 307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7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들 읍면동 단위 복지직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332개 읍면동에 평균 2명의 복지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한 명뿐인 곳도 태반인 상황에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도입된 정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 수혜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복지직공무원들에게만 주어져 있어 사회보장업무의 대부분이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대상과 업무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비대칭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인과의 접점이자 행정 최일선의 복지직공무원들의 신변 안전, 인권침해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직공무원에게는 복지가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말처럼 이들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95%가 복지수요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고, 언어적 폭력은 91%,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이 61%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폭력의 유형은 뺨 때리기, 밀기, 멍살 잡기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성적 폭력과 스토킹, 업무방해 등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북도에서는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현황, 피해사례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4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등 지금까지 복지직공무원들이 업무 과중과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과중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려워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복지직공무원과 복지대상자 간의 비대칭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민원인과의 접점인 행정일선의 복지직공무원들의 신변 안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치유 및 신변안전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의 정의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의 구체적인 요소로는 육체적인 형태적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 정신 기능적인 요소로 분류하여 평가되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매체의 사회면을 뒤덮고 있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의 근간에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묻지마 범죄, 흉악범죄 발생의 증가, 약물 중독, 자살 증가 등 사회 병리현상으로 이어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등 6개의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정신분열증의 경우 2005년 9만 4,000여 명에서 2015년 10만 6,000여 명으로 11.3% 증가하였고, 분노조절장애는 2만 2,000여 명에서 4만 9,000여 명으로 2배 이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300명에서 1,49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망상장애는 5,000여 명에서 6,800여 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황장애는 3배로, 조울증은 2배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5명으로 전국 평균 26.5명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46.8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29%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 3,000억 원,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 5,000억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민의 25%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바로 나라의 문제이고 우리 이웃이요, 우리 동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정신건강서비스 인지율이 32%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령 ‘정신질환은 감기와 같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며,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특히 7, 80대 남성 노인의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각률이 여성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경북도 평균보다 70%나 높으며, 지역별 자살률 또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부의 경우 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5곳인데 반해 군부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성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도민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신보건 관련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 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교사 재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가장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비인권적인 대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의 현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표 1〉 기간제 교사 현황(2016년)

구분	2016년										
	교사 수				담임교사 수				담임비율		
	정규	기간제	계	기간제 교사 비율 (%)	정규	기간제	계	기간제 교사 비율 (%)	정규	기간제	전체기간 제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서울	55,519	7,326	62,845	11.7	34,600	3,198	37,798	8.5	91.5	8.5	43.7
부산	20,199	2,961	23,160	12.8	12,539	1,457	13,996	10.4	89.6	10.4	49.2
대구	17,080	1,967	19,047	10.3	10,578	812	11,390	7.1	92.9	7.1	41.3
인천	18,467	2,251	20,718	10.9	11,897	1,085	12,982	8.4	91.6	8.4	48.2
광주	11,145	1,525	12,670	12.0	6,948	783	7,731	10.1	89.9	10.1	51.3
대전	10,854	1,343	12,197	11.0	6,794	725	7,519	9.6	90.4	9.6	54.0
울산	8,028	1,245	9,273	13.4	5,042	599	5,641	10.6	89.4	10.6	48.1
세종	2,204	138	2,342	5.9	1,376	39	1,415	2.8	97.2	2.8	28.3
경기	77,232	12,285	89,517	13.7	49,113	6,545	55,658	11.8	88.2	11.8	53.3
강원	12,775	720	13,495	5.3	7,552	280	7,832	3.6	96.4	3.6	38.9
충북	11,892	1,009	12,901	7.8	7,200	601	7,801	7.7	92.3	7.7	59.6
충남	15,220	1,728	16,948	10.2	9,447	929	10,376	9.0	91	9	53.8
전북	14,831	1,371	16,202	8.5	9,199	403	9,602	4.2	95.8	4.2	29.4
전남	15,056	1,599	16,655	9.6	9,380	487	9,867	4.9	95.1	4.9	30.5
경북	18,762	2,519	21,281	11.8	11,087	1,409	12,496	11.3	88.7	11.3	55.9
경남	23,748	3,022	26,770	11.3	14,700	1,533	16,233	9.4	90.6	9.4	50.7
제주	4,683	463	5,146	9.0	3,028	233	3,261	7.1	92.9	7.1	50.3
합계	337,695	43,472	381,167	11.4	210,480	21,118	231,598	9.1	90.9	9.1	48.6

출처 : 교육부

〈표 1〉에서 보듯 2016년 도내 기준 전체 교사는 2만 1,281명이며, 이 중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11.8%인 2,519명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11.4%보다 높으며, 경기, 울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0.1%, '15년 11.3%, '16년 11.8%로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은

정규 교사와 유사 혹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낮은 임금, 경력 불인정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연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교육계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넘어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정규 교사와 차별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2014년 1,074명, '15년 1,291명, '16년 1,4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은 2014년 49.4%로 전국 5위, '15년 53.1%로 전국 3위, '16년에는 바야흐로 55.9%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상 불안, 저임금 등이 정규 교사에 비해 교직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학생지도 권한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 권한에 대한 차별적 시선 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 2〉 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및 명퇴수당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명예퇴직 수당	명퇴수당 1인 지급액 평균
2013	명예퇴직인원	124	126	97	347	262억원	7,500만원
	명퇴자기간제채용	20	20	11	51		
	채용비율	16.13	15.87	11.34	14.70		
2014	명예퇴직인원	254	151	128	533	429억원	8,000만원
	명퇴자기간제채용	173	13	27	213		
	채용비율	68.11	8.61	21.09	39.96		
2015	명예퇴직인원	153	234	189	576	432억원	7,500만원
	명퇴자기간제채용	85	9	10	104		
	채용비율	55.56	3.85	5.29	18.06		
2016	명예퇴직인원	156	97	82	335	315억원	9,400만원
	명퇴자기간제채용	55	8	9	72		
	채용비율	35.26	8.25	10.98	21.49		

출처 : 경북도교육청

또한 〈표 2〉에서 보듯 도내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교사 재채용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명퇴 교사는 총 1791명으로 이 중 440명, 즉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 되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8,000만 원의 명퇴수당과 연금을 받으면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층 등의 고용확대라는 기간제 교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도덕성을 최우선하는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들 또한 경북교육의 일원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정규 교사 중 정규 담임교사 비율은 59%로 정규 교사 절반가량이 담임을 맞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담임을 맡을 정규 교사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교사는 학생과의 최접점에서 진로지도, 교우관계 형성, 인성, 학교 폭력 예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교실 붕괴, 교권 실추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과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 정규 교사가 학급담임을 보다 많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 된다는 것이 자칫 이중수급으로 비쳐지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우며, 사회적 시선도 또한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명예퇴직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다는 것은 명예 퇴직의 취지 등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 되는 데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집하고 오로지 국가발전 및 사람중심의 경북발전을 위한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도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소비재로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여 서민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 저조 및 가스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도내 농어촌지역이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질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에 2014년 당시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4%에서 2016년에는 61.1% 수준으로 확대되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공급률 80.2%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충북 64.7%, 전북 65.4%보다 저조합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 성주, 청송, 영양, 울릉군은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고 군위 0.5%, 의성 0.8%, 영덕 1.2%, 울진 6.1%로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2년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총 4만 6,23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이 중 단독주택은 1만 404세대로 전체의 22.5% 정도이며, 2016년에도 3만 2,921세대에 단독주택은 6,677세대로 20.3%에 불과합니다.

특히 울진군은 2015년에 총 2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나 단독주택은 겨우 1세대뿐이며 2016년에도 총 963세대 중 4세대만 단독주택일 정도로 경제성만을 고려한 공동주택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가스가 내 집 옆 2~3m 거리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급에서 소외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감만 가중되어, 같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그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겨울 추위를 전기장판 한 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마저도 전기요금이 아까워 추위에 떨면서 혹한의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 경북’의 현실이며 ‘사람중심, 경북 세상’을 외치는 우리 경북의 민낯인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스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와 취약지역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5년 9월에 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단 한 푼의 기금조차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 수급계획과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배관투자 계획은 45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366억 원에 그쳐 계획대비 실적이 81% 수준으로 서민용 가스공급망 설치에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영남에너지, 서라벌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 대성에너지 등 5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독점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경영현황을 보면 포항·구미를 커버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서비스의 경우 순이익이 연간 평균 26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무려 470억 원이라는 배당금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가스시설투자는 2010년에 327억 원에서 2015년에 184억 원으로 무려 43.8%나 감소하여 소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사회 환원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별 순이익 대비 배당금/공급시설 투자 비교

회사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순 이 익	270	263	251	285	247	263	1,316
	배 당 금	170	209	189	215	470	-	1,253
	시설투자	327	353	282	291	301	184	1,554
서라벌 도시가스(주)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순 이 익	64	73	78	80	83	72	450
	배 당 금	31	31	168	55	56	57	398
	시설투자	29	25	38	42	69	123	326
대성청정 에너지(주)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순 이 익	48	29	33	56	44	20	230
	배 당 금	10	5	5	10	15	15	60
	시설투자	18	22	38	59	54	112	303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점유율 현황(2014, 2017 비교)

2014년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소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	소비자요금	소매공급비용/ 소비자요금
	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영남에너지 포항	19.4510	1.2829	1.7822	22.5161	7.9%
영남에너지 구미			1.7842	22.3008	8.0%
서라벌도시가스			2.1367	22.6533	9.4%
대성청정에너지			3.4917	24.0083	14.5%

2017년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소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	소비자요금	소매공급비용/ 소비자요금
	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영남에너지 포항	11.1613	1.8249	2.1595	15.1457	14.3%
영남에너지 구미			2.1653	15.1497	14.3%
서라벌도시가스			2.2037	15.1899	14.5%
대성청정에너지			2.5920	15.5782	16.6%

게다가 2017~2018년도 도시가스사별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살펴 보면,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총 계획세대의 15.1%만을 단독주택에 계획하고 있고, 서라벌도시가스는 41.3%를 단독주택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 영덕, 울진지역에 공급하는 영남에너지는 돈 안 되는 단독주택은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역별 도시가스사업체의 투자방식과 운영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에 있어서도 2014년의 경우 1메가줄(megajoule) 당 22.5161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15.1457원으로 낮아져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산업자
원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료비 가격이 하락한 이유이고, 오히려
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로 결정해주는 도매공급비용과 도시가스
사가 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은 모두 엄청나게 상승하여 도내 가스업
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가스사업자들에게만 맡겨놓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도내 도시가스사업체의 권역별 독점운영체제
개선 및 도에서 조정하는 공급비용 산정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에 경북도,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주)영남
에너지서비스 등 4개 기관에서 ‘울진군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가스
공사는 임시공급소를 평해에 2013년 하반기 중 착공하여 2018년까지
직접 운영하고,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연도별 배관투자 및 가스공급
계획 작성 및 2018년까지 평해·후포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
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당사자 중 ‘갑’인 경북도는 2013년 11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울진군 관내 연도별 공급계획 수립을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바 없습니다. 과연 경북도는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 가스사가 홈페이지에 간략히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도시가스가 절실히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도민들이 이 용자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우리 경상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과 편리성, 안전성이 뛰어난 도시가스의 편익을 우리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가스기금의 조속한 조성과도 자체의 공급배관 투자 및 취약지역 시설분담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 36호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진은 정부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입각한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발전단지입니다.

이처럼 울진군민들은 국가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경북 발전을 위한 도민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적극 협조하고 묵묵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울진~분천 간 철도사업의 중단과 국도 36호선 2차로 추진, 그리고 36호선 기존도로의 폐쇄 등,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울진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가장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봉화군 소천면에서 울진군 금강송면을 잇는 국도 36호선을 결국 왕복 2차선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최근에 건설 중인 국도치고 2차선으로 개통된 곳은 아마도 봉화 소천~울진 금강송면 구간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로로 추진된 것도 문제지만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봉화 소천~울진 금강송면 구간은 대부분 교량 및 터널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400~600m 이상이 되는 교량과 커브지점이 많아 겨울에 눈이 내린 다던가 안개가 끼는 날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안전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험표지판, 안전간판 등은 터널을 지나 내리막 커브길에서 상당히 위험한데 오히려 오르막길에 설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급한 안전시설만이라도 제대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리막길과 커브길 등에 열선으로 처리하여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고 커브길에 대형 안전간판을 대량 설치하여 대형사고로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안전시설 확보와 관련한 협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동서5축 고속도로 보령~울진 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오창에서 울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기존에는 발전용 원자로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하였으나 이제는 30km로 확대되어 더 멀리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번, 지역의 황이주 의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한울원전 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6만여 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대피해야 하고 국도 7호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대피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쪽으로의 대피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도 국도 36호선은 2차선으로 개통되었으며 또한 나머지 구간도 왕복 2차선 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조차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 36호선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조건으로 내건 ‘울진 서면~근남 기존 국도 생태복원계획’에 따라 신설 36호선 완공 시 기존 36호선 도로 폭 축소·폐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2중·3중의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됨으로 크게 반발하고 전국에서 신설 국도가 건설되었다고 기존 도로를 복원한 예가 어디 있느냐며 복원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전사고 발생 시 피난도로 확보, 산불 등 화재진압 도로 및 주민의 생활도로로서 기존 도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폐쇄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잘 유지·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안전성 확보는 지역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존권을 외면하고 그저 국도는 도의 관할이 아니라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도 36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과 안전시설의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계부처와 국토관리청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편중배치 문제와 간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할 내용이나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편중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특정지역 교원 편중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발언을 통해 수없이 지적되었음에도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교원인사정책을 단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제272회 도정질문 당시, 도내 울진, 영덕, 청송 등 특정지역의 신규교사와 5년 미만의 짧은 경력의 교사가 집중 배치되고, 대도시 및 대구 인근지역의 신규교사 배치가 현저히 낮아 지역 간 편중배치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께서는 신규교사를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력교사 유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규교사 지역별 편중배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피지역의 경력교사 유인대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신규교사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도내 초등학교 시·군별 발령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영주는 발령교사 53명 중 신규교사가 37명으로 69.8%, 의성은 발령 10명 중 신규 7명으로 70%, 청송은 발령 12명 중 신규교사가 11명으로 91.7%, 울진은 발령 26명 중 신규 18명으로 69.2%에 달합니다.

반면에, 대도시 및 대구 인근에 위치한 구미는 발령 106명 중 신규 2명으로 1.9%, 칠곡 2%, 포항 2.6% 등으로 지역별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은 학원 수가 적고 우수강사들을 접하기 어렵고, 다양한 경험 등 지덕체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안에서 받는 공교육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갖는 것이 농어촌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신규임용교사들은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교육청의 신규임용교사 배치가 주로 생활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및 산간오지에 배치되다 보니 우수 신규교사 확보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올해 도교육청은 초등교사 350명 모집공고를 냈지만 290명이 지원하여 264명만 합격했습니다. 즉 필요인원보다 8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내 농어촌학교로 발령받은 신규교사 상당수는 대도시로 옮겨가기 위해 탈 경북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도내 농어촌 및 산간오지에 힘없는 신규교사를 집중 배치하는 잘못된 인사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교육감께서 신규교사들의 특정지역 배치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무엇보다 대규모학교가 많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나은 대도시 및 대구지역에 우수 경력교사들이 근무하기를 원하여 대거 이동하다 보니 농어촌, 특히 도내 북부권 특정지역은 기존 교원이 이동하고 난 빈자리를 신규교사로 채우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서벽지 등 도내 농어촌지역의 우수 경력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관사 보급률이 66.2%에서 2017년 현재 79%로 확대되어 소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지역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관사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후된 관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내 사택의 경우, 시지역 공립교직원 중 관사에 입주할 희망하는 비율이 5.7% 수준이며, 군지역의 경우에는 26%의 교사들이 관사에 입주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시·군별 관사 현황을 보면 시지역의 관사 보급률은 80%에 달하나, 오히려 군 지역은 78% 수준입니다. 특히 의성 57%, 영덕 56%, 청송 75%로 열악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학교 교직원에게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처럼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관사조차도 30년 이상 노후된 관사가 2014년 대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울진의 경우 전체 관사의 43%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있고, 1개동에 2014년에는 3세대가 함께 지내던 것이 오히려 2017년에는 4세대가 함께 지내는 등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야 어찌 우수한 경력교사들을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교사의 지역편중 배치문제 결과, 선호지역과 기피지역 구분 없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는 도교육청의 인사관리 기준 재조정과 원전지역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명품교육’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이 도시와 농어촌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경북교육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면밀하게 살피는 민생 중심의 경북도로 거듭나기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도정을 살피 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사과의 고장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위훈보국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 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매월 1만 원의 수당을 시·군에 분기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급실적을 보면 참전유공자 2만
2,917명, 유가족 3,197명 등 2만 6,114명에게 30여억 원의 도비를
지급했습니다.

전국 시·도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월 5만원, 울산이 6만원, 제주도는 연령에 따라 7만 원에서 4만 원, 세종시도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남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북, 경기, 전북은 1만 원을 지급하고 강원, 전남, 충남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도에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시·군마다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되던 6.25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예산 205억 원을 편성, 시·군과 매칭해서 8,564명의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는 경북의 혼과 호국정신을 강조하면서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늘 강조해 왔지만 보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만 677명의 6.25 참전유공자가 있으며, 평균 연령은 85세가 넘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고령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유공자 분들의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 호국의 고장인 경북도가 앞장서서 참전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연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과 임금상승률이 전국 시·도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7,855만 원이지만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3,123만 원으로 무려 5,267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광역시·도 지방공기업개발공사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131만 원에서 1억 732만 원으로 5.6% 인상되었고, 기타 공사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8,657만 원에서 8,936만 원으로 3.1%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북개발공사 기관장 연봉은 8,900만 원에서 1억 3,123만 원으로 47%, 임원 연봉은 8,122만 원에서 1억 1,468만 원으로 무려 41%나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경북관광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2013년 8,876만 원에서 2015년 1억 880만 원으로 23%나 인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경북개발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지방공기업 중 가장 높았으며, 임원 연봉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기업 114개사에 경영개선을 명령해 공사·공단 7개사를 통합하였고,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는 4개 기관을 청산하였으며, 인력도 1,088명을 감축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기관장 및 임원 연봉과 임금인상률은 이와는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3%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기관장이나 임원이 본청 출신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고액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연봉은 도에서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과 직원의 연봉을 전적으로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방침에 역행하는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기관장 및 임원의 과도한 고액연봉 지급과 높은 임금상승률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송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속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파리 유네스코본부로부터 청송 세계지질공원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4월 열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2010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쾌거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과학적 중요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33개국에 120개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모두 9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북에는 울릉도·독도, 청송, 동해안 등 3곳이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자연유산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하면서 교육과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최초 인증으로부터 4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위가 박탈됩니다.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청송군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몇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공식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만큼 청송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세계지질공원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청송 세계지질공원을 경북 관광의 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청송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지질공원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로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청송 세계지질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의 체험, 교육, 연구를 위한 세계지질공원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세계지질공원 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북에는 청송 세계지질공원을 포함해 국가지질공원 아홉 곳 중 세 곳이 있어 세계지질공원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송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 외에도 역사, 문화, 생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자연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조기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지질공원센터 유치 등 관련 사업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왕산 진입도로 확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의 오지였던 청송이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2시간대, 대구 등 남부권과 1시간대로 가까워지면서 동해안과 함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문화관광 사업과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마무리되면 천혜의 자원과 문화 콘텐츠가 갖추어진 청송은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연간 150만 명이 찾고 있는 주왕산국립공원 진입관문인 주왕산삼거리 2차로 구간과 주변도로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매년 9월에서 11월,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되면 노폭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및 차량소통 장애로 교통체증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는 2015년 1월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도로의 조속한 4차로 확장을 경북도에 요청했고, 2016년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월에서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8년 12월

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도로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도로의 4차로 확장 공사가 예정된 기한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관광시즌이 되면 청운삼거리에서 주왕산 입구까지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올해부터는 정체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2월로 예정된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도로 4차로 확장 공사의 9월 조기개통과 청송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기한 내 완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25건)		195
☐ 예	산	안(1건)		373
☐ 동	의	안(2건)		376
☐ 결	의	안(1건)		386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 2017. 3. 17)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 의원 외 8명, 2017. 3. 3)
-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만 의원 외 11명, 2017. 3. 3)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기욱 의원 외 11명, 2017. 3. 3)

-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현 의원 외 15명, 2017. 3. 3)
-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식 의원 외 9명, 2017. 3. 3)
-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4명, 2017. 3. 3)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식 의원 외 11명, 2017. 3. 3)
-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영길 의원 외 21명, 2017. 3. 3)
-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조주홍 의원 외 11명, 2017. 3. 3)
-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식 의원 외 9명, 2017. 3. 3)
-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황병직 의원 외 5명, 2017. 3. 3)
-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3명, 2017. 3. 3)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13명, 2017. 3. 3)
-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7. 3. 3)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김창규 의원 외 8명, 2017. 3. 3)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17. 3. 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변인”을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청신도시본부, 건설도시국”을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기획경제위원회 가. <u>대변인</u>,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도민안전실, <u>도청신도시본부</u>, <u>건설도시국</u>,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현행과 같음) 2. 기획경제위원회 가. <u>대변인</u>, <u>소통협력담당관</u>,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도민안전실, <u>건설도시국</u>, <u>도청신도시본부</u>,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여성가족 정책관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 군수
해양수산 정책관	1.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 군수
사회 재난과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2.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8조	시장 군수
청 정 에 너 지 산 업 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철곡 군수 (SOFA 자동차 관할)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청 에 너 지 산 업 과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고의 수리 자. 위해 방지조치의 명령 등 차. 보고·조사 등 카. 청문 타. 과태료부과·징수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 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4.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5.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6.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34조 「전기사업법」 제7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같은 법 제19조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20조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명령	같은 법 제21조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시장 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 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시장 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시장 군수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 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4조	
	28. 계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규칙 제8조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시장 군수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2항 (같은 법 제89조 준용) 같은 법 제94조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마. 시설사용료 인가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 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아. 개선명령 자. 사용명령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타. 상속신고수리 파. 휴업·폐업허가 하. 보고·검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2항 (같은 법 제89조 준용)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4조 준용)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5조 준용)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준용) 같은 법 제79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 등 너. 청문 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러. 과태료 부과·징수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 대상 사업에 한함) 가. 사업등록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부터 제6항 같은 법 제13조제7항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단서조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시장· 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할)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 합병 신고수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타. 차령연장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바. 상속신고수리 사. 차령연장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제14조제1항, 제3항 준용) 같은 법 제35조 (제15조제1항 준용)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시장· 군수

소관 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카. 과태료부과·징수 43. 임시은행허가업무의 관리 44.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45.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4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제7호	시장 군수
일자리경제 교 통 단	47.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48.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제2조의4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자리경제 교 통 단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 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 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 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 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사 회 적 경 제 과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교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나. 직권 말소 다. 주소 변경 등의 공고 라. 위반행위 조사 등 마. 등록 취소 바. 과태료 부과·징수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교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나. 등록의 직권말소 다. 지위승계 신고 라. 이전계약 신고 마. 등록 취소, 청문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제66조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제22조의2 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2,3항	시장 ·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사 회 적 경 제 과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홍보기간 접수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신고 마. 조합 해산 신고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4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8조제4항	시장 군수
기 업 노 사 지 원 과	1.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 이행명령 권한 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명령·출입·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2.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 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글 로 벌 통 상 협 력 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 군수
자 치 행 정 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제2항	시장 군수
회 계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 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 군수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 군수
문 화·용 성 사 업 단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 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 조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문화·융성 사업단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장 군수
농업 정책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권)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시장 군수
F T A 농식품 유통 대책단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 군수
친환경 농업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 군수
농촌 개발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 군수
축산 경영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 감독 3.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4.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5.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6.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8조제1항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8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정책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 적합 및 사업계획 면제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 허가(변경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시설 승인(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제위탁 승인, 폐기물처리업 기준제외 인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의 제1항 제7호, 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정책과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납부 (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 (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등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 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 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 이하로 배출 인정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 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와 보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9조, 제59조의2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3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정책과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및 권리자에 통보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 입력 등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지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서. 방지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 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제40조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6조 별표 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정책과	바. 과징금의 처분 등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러. 청문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인정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정책과	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 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4. 고효율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효율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효율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효율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안전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 (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바.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자. 과징금 부과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시장 ·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환경 안전과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 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11.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12.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15. 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제2항, 제3항제1호 부터 제8호의2, 제4항제1호의2, 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2항	시장 군수
물산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시장 군수
산림 자원과	1. 산림기술자 배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산 립 자 원 과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 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 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 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산림보호법」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산림보호법」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산지관리법」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산 립 자 원 과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사. 복구의 대집행 등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시장 군수
산 립 산 업 과	1.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제2항	시장 군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공 통 사 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공 통 사 항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의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 군수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 군수
식 품 의 약 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9. 마약류의 사고보고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제103조 「약사법」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9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2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 16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카. 법 제13조의3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 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에서 정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제10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이 주요 유치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 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 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조정도화에 관한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 5 항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활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함)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m²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함) 라. 도서관 마. 주차장 바. 궤도 사. 시장 아. 공공청사 자. 수도공급설비 차. 하수도 카. 도축장 타. 방풍설비 파. 사방설비 하. 방화설비 거. 방조설비 너. 연구시설 디. 문화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 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 5 항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러. 사회복지시설 머. 공공직업훈련시설 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서. 광장(단, 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함) 어.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저. 공공공지 처.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커. 전기공급시설 터. 장례식장 퍼. 저수지 히. 가스공급설비 고. 방수설비 노. 유수지 도. 폐차장 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모. 청소년수련시설 보. 공동묘지 소. 화장시설 오. 봉안시설 조.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코. 자동차정류장 토. 열공급설비 포. 방송·통신시설 호. 공동구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자연장지 두. 종합의료시설 루. 수질오염방지시설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결정 및 고시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포함)·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9.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 고와 협의권 10.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1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의 연장 1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부터 제92조 같은 법 제98조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11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13.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14.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1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6. 선수금 승인 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2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27. 청문 실시 28.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 시 계 획 과	29.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 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 (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 3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3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3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시장군수 시행사업 제외) 및 변경인가 3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보고, 공고 35.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36. 감독 및 감사 등 37.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단, 330만㎡ 미만 사업) 38.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공기관이외의 시행자에 한함) 39. 전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 40.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 제외) 41.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같은 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부칙 제2조에 의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47조, 제55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76조의2 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로철도 공 항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 2. 권한의 위임·위탁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4. 공익을 위한 처분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2. 건설기계 등록 등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4. 등록의 말소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61조 부터 제63조, 제66조, 제68조 부터 제70조, 제72조,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8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도로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로철도 공 항 과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장 군수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 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같은 법 제14조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5조	
	다. 협의	같은 법 제16조	
	라. 계약의 체결	같은 법 제17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18. 미불용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채부착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같은 법 제17조	
	21.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23.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2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도로 철도 공 항 과	25. 건설기계 파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 처분, 보고검사 등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27. 원인자 부담금 28. 수수료의 징수 29. 과오납금 반환 30. 변상금의 징수 31. 파태료 32.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공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나. 공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44조 「도로법」 제51조, 제52조 「도로법」 제91조 「도로법」 제103조 「도로법」 제94조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장 군수
건축 디자인과	1.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 음의 권한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 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1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제1호 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하 천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외) 및 고시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포함) 및 감면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권한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시장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하 천 과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시장 군수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의 본소와 지소(출장소등 본소의 하부기관 포함)내의 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사업소장 및 지소장
축 산 경 영 과	1.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장 포함)
환 경 정 책 과	1. 도림공원에 관한 다음업무 (팔공산도림공원구역에 한함.)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나. 도림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 금지행위의 단속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카. 자연자원의 조사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팔공산도림공원관리사무소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정책과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하. 대집행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너. 허가에 관한 협의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러.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버. 주민지원사업 서.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도로철도 공 항 과	1. 도로표지 정비 2. 지방도 점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3.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 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제3항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법」 제54조의6제 2항	종합건설 사업소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	：	：	：
수입·산 진·홍·과	(생략)	(생략)	시장· 군수	해양수산 정책·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생활 안전·과	(생략)	(생략)	시장· 군수	사회 재난·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	：	：	：	：	：	：	：
민생경제 교통·과	1. ~ 41. (생략)	(생략)	시장· 군수	일자리 경제· 교통·단	1. ~ 4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42. (생략)	(생략)			4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시설 적합여부 확인	(생략)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현행과 같음)	
	나. ~ 사. (생략)	(생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 정지명령, 사업 계획 변경 명령	(생략)			아. 등록취소, 정지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현행과 같음)	
	자. ~ 카. (생략)	(생략)			자. ~ 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3. (생략)	(생략)			4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4. 정기점검기간 경과 사실통지	(생략)			《삭제》		
	45. ~ 49. (생략)				44. ~ 48. (현행 제45호부터 제49호까지와 같음)	(현행 제45호 부터 제49호 까지와 같음.)	
일자리 창출·단	1. (생략)	(생략)	시장· 군수	사회적 경제·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신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 매업 및 후원방문판매 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변경신고, 휴· 폐업 신고 나. 직권 말소 다. 주소 변경 등의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제27조	

현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일 자 리 창 출 단	<신설>		시장 · 군수	사 회 적 경 제 과	라. 위반행위 조사 등 다. 등록 취소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9조 제5항 같은 법 제63조 제4항	시장 · 군수
	<신설>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교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나. 등록의 직권말소 다. 지위승계 신고 라. 이전계약 신고 마. 등록 취소, 청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제22조의 2 제7항 같은 법 제40조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홍보기간 접수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 마. 조합 해산 신고 바.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감독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46조 의2 제1항 같은 법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8조 제4항	
⋮	⋮	⋮	⋮	⋮	⋮	⋮	⋮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기업노사 지원과	1. (생략) 2.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시장 · 군수	기업노사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증자·개선·수거· 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 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 · 군수
⋮	⋮	⋮	⋮	⋮	⋮	⋮	⋮
문화 예술과	1. (생략)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정지명령, 사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생략) 「음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장 · 군수	문화 예술과	1.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시장 · 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항	시장· 군수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문화융성 사업단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마.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 제29조	
					바. 청문	같은 법 제30조	
					사. 수수료	같은 법 제3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	⋮	⋮	⋮	⋮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축산 경영과	1. (생략)	(생략)	시장· 군수	축산 경영과	1.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약사법」 제35조 제2항,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0조			〈삭제〉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등 변경 신고 승인	동 규칙 제20조제3항			2. ~ 6.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4. ~ 8. (생략)	(생략)					
⋮	⋮	⋮	⋮	⋮	⋮	⋮	⋮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	⋮	⋮	⋮
축산 경영과	1.(생략)	(생략)	가축위생 시험소장 (지소장포함)	축산 경영과	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물위생 시험소장 (지소장포함)
⋮	⋮	⋮	⋮	⋮	⋮	⋮	⋮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의회의원”을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장”을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
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경
우가”를 “각 호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제45조에 따른 “장애 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상금액등”을 “보상금액 등”으로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상해 등”을 “상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의원 중 1인”을 “의원 중 1명”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본부·국장 1인”을 “실·국장 1명”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있는 자 1인”을 “있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으로, “의장”을 “의회”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그”를 “심의회의”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15일 범위 안에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대하 여는”을 “대하여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보상대상의원 및 청구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첨부서류란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를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보상대상의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직무”라 함은 <u>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며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u>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1. ~ 3. (생 략) 4. <u>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u>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u>공무상재해인정기준</u>”에 준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u>——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u>——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u>——</u>. 2. <u>——제33조에 따른</u> <u>——</u>.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u>——</u> ② <u>——</u> <u>——「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 우는 <u>도의원</u> 당해연도 의정활동 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 우는 <u>도의원</u> 당해연도 의정활 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 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② 제1항 <u>각호의</u>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 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 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u>각 호와</u>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_____ _____ _____<u>의원</u>_____ _____ 2. _____ _____<u>의원</u>_____ _____ 3. <u>그 밖에</u>_____ _____ _____ _____. ② _____<u>각 호가</u>_____ _____ _____.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_____ _____—제45조에 <u>따른 “장애등급”</u>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_____ _____ <u>각 호와</u> _____.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 구자가 <u>[별지 제1호서식]</u>에 의하여 <u>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을 경유하여 <u>도지사</u>에게 서면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의 제13조제3항의 <u>심의결과</u> 의거 도지 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 한 <u>구조</u>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u>보상금액</u> 등을 심의하기 위	1. (현행과 같음) 2. ----- <u>그 밖에</u>----- ----- ----- ② ----- ----- ----- ----- ----- ----- <u>[별지 제1호서식]</u> 에 따라 <u>의장</u> ----- --- <u>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u> <u>한다)</u>-----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u>심의</u>를 거쳐-----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 <u>계좌</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u>보상금액</u> 등 -----

현행	개정안
하여 도에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의회의원중 1인</u> 2. <u>도본청 관련 본부·국장 1인</u> 3. <u>의무직 공무원 1인</u> 4. <u>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u>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① (생략) 1. ~ 3. (생략) 4. <u>기타</u>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u>—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상해 등</u> ----- -----. ② ----- -----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1. <u>의원 중 1명</u> 2. ----- 실·국장 1명 3. ----- 1명 4. ----- <u>있는 사람 1명</u> ③ <u>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u>----- ----- -----의회----- -----. 제10조(심의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

현행	개정안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심의회의----- ---. 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따라 ----- ----- ----- 15일의 범위 에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u>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u> 「경상북도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 ----- <u>대하여는</u>-----<u>범위에서</u>----- ----- -----.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15일	
보상대상 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보상대상 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청 구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청 구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영수증 금영기관				계좌 번호						보상금 영수증 금영기관				계좌 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 구분하여 치료기간 기재)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 구분하여 치료기간 기재)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 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 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접수	제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접수	제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시					즉시
보상대상 의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보상대상 의원	성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사망·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심의회 심의결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를 “경상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	경상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u>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u> —————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u>영 제21조제1항의</u> 규정에 의 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 <u>제26조제1항</u> ————— ————— —————.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u>제7조</u> (생 략)	<u>제6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u>제8조</u> (생 략)	<u>제7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 지방
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및 민간전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경상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u>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1조(목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및 민간전문가로 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기업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제1항 중 “금융·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6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사업순위 결정 및 용자배분
4.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1. 경상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2. 경상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3. 경상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는 폐지한다.

4. 경상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는 폐지한다.

5. 경상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2]

면 제 대 상(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자. 종교단체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등록, 다만, 면제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면제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라. 주민 직영사업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2. 매입의무 면 제 대 상 인·허가 등	마.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u>가 정한 바에 의함. 바.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탄광지역 개발촉진 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 자.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차. 천제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지방 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카.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 파.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한 시 면 제 대 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한다.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비고 : 감면기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업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기업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용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금융·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용자배분 2.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용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능) ----- -----.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사업순위 결정 및 용자배분 4.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조례로 정하는 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 100분의 20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 100분의 40

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0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11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경상북도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
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
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이라 한다)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관기관”이라 한다)를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

- 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8을 적용하여 과세
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가. 농지 : 1천분의 20
-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30
- ② 제1항의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예정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역(예정지역외의 지역)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

- 한 경우.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 가.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
-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3. 제1항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토지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예정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 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 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제18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2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조, 제4조 및 제14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제23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 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 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7조(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중 “법 제138조 및 영 제105조의2”를 “법 제146조 및 영 제82조”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97조”를 “「국세징수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영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법 제91조”로 한다.
4. 제14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1조 및 제12조”를 “법제11조 및 법제12조”로 한다.

제19조 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세율) ————— ————— 법제11조 및 법제12조————— —————.
제19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 ————— ————— ————— ————— 제18조————— ————— ————— —————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채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5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1.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1-3지구)
- 사업규모 : 149,173m²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근 거 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사 업 비 : 약 290억원(보상비 133, 조성비 등 108, 기타 49)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
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
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
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 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 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3. 경상북도의회 의원
4. 도 사회적 경제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전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 4 장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
9. 경영·노무·회계·마케팅·교육·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공익신고 처리를 규정하고 공익 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도가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익신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신고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신고 분야 비영리 민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 3 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0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③ 센터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후 조사여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사여부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도지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 ② 도지사는 동일한 공익신고 내용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도지사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
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 4 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5조(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하는 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도지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0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1조(공익신고 교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공적조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 자 원 명												
② 생년월일													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직급 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1201-1(2-1)일 (1)

(뒷면)

1984. 1. 26 승인

주요학력 및 경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㉓ 년 월 일	㉔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㉕ 년 월 일	㉖ 내 용	㉗ 년 월 일	㉘ 내 용
㉙ 공 적 사 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자원”이라 함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경상북도 및 각
시·군 외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사회복지전달체계”라 함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적 없이 경상북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시·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민간자원”이라 함은 사회복지전달 체계에서 경상북도 및 각 시·군 외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사회복지전달체계”라 함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적 없이 경상북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 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체계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u>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u> 독거노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제7조 (생 략) <신 설>	제4조(실태조사) ① ----- ----- <u>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u>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7조(시·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u>도내 시·군에서 독거 노인을 위한 민간 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u>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9조 (생략)	<u>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u> 제9조·제10조(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경상북도 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 지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말기암환자와 암 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 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암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한다.

②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암 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2. 암 조기검진 사업
3. 환자 및 보호자, 지역사회 교육사업
4.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5. 암 예방지도자 시범사업
6. 그 밖에 암 예방과 암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도 암 관리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암 관리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위원의 자격, 회의개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암 예방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암 예방 및 암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5대 암 조기검진 사업
2. 암 환자의 암 종류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의료비
3.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4. 그 밖에 암 예방 및 관리 사업

제8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의무
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센터, 보건소,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원활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적·사회적·정서적 지지 제공

2. 암 환자 사례관리

3. 암 인식개선 캠페인

4. 암 생존자와 함께하는 생활교육

5. 다른 기관과 연계한 교육·홍보

③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는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인력(이하 “호스피스”라고 한다)의 교육 및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내용과 시간 및 양성기관 등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암 예방·검진·관리 및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저출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정책
3. 결혼·출산·양육·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4.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5.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정책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조의2(저출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시책 3. 결혼·출산·양육·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5.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
〈신 설〉	<u>제4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사업 대상) ①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u>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 제5조(지원사업 대상) ① <u>도지사</u>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u> 5.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북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도지사는 연합회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도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8. 문화원의 날 행사 및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연합회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
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품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빗공해, 야간경관, 환경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빗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빗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빗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빗 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빗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 대하여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인력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자원과장이 된다.
-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용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유아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과 정서 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유아교사”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4.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유아들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유아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산림교육지역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유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산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지원)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아 산림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도내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

3.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유아숲지도사 등의 양성지원) ① 도지사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림교육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에 따른다.

제9조(유아 산림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해당업무 담당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유아 산림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전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6. 쌀가공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7. 밀가루 사용대체를 위한 쌀가루 생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보급

제9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쌀가공업자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우수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기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써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
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한다.

제8조(관련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같은 조 제4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로 한다.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를
“법령에 의하여 해당”으로 하고,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난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
8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의”를 “그”로,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위원회위원장”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상북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 같은조 제2항 중 “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위원은”은“실무조정위원은”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도민안전실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방송협의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를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제1항 중 “그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본문 중 “그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 위원회”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를 “도지사 는”로, “계통 관리”를 “관리”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를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위원회의 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안전 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3. (생략) 4.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신설〉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u>제3조(위원회의 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위원회의 기능)</u> 경상북도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_____ 재난 및 안전관리 _____ 2. 3. (현행과 같음) 4. _____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_____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에 의하여 해당 _____ 7. 그 밖에 _____ 회의에 부치는 _____ <u>제3조(위원회의 구성)</u> ① _____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_____ 사람이 --.

현행	개정안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 2. 도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3. ~ 5. (생략) 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 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 2.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 3. ~ 5. (현행과 같음) 6. ————— 재난 및 안전관리————— 7. ————— 재난 및 안전관리————— 8. 재난 및 안전관리————— 있는 사람 ————— 위촉 하는 사람 ②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 —————. ③ ————— —— 1명 —————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담당과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원회의 의장이</u> 되며, <u>회무를 통할한다</u>.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실무위원회위원장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u>당해</u>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u>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4. <u>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 그 ——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상북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 —— 실무조정 위원은 —— —— 해당 —— 사람이 —.

현행	개정안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③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 ----- -----.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 -----. 제8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도민안전실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의의 간사는 재난 방송 협의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재난방송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 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_____. ② 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범위에서 _____.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_____. _____ 실무조정위원회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 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생략)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_____ _____ _____ _____. 제12조(수당) _____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_____ — 범위 _____ _____ _____. 제13조(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_____ _____ 관리 _____ _____. 제15조(운영세칙) _____ _____ 실무조정위원회 _____ _____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_____.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영실기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의 생존수영과 기본영법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수영실기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영실기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실기교육 추진방법
3. 수영실기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수영실기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수영실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수영실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수영장 실태 및 단위학교의 수영 실기교육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수영실기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수영실기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대상자가 수영실기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및 전문강사 확보·연수)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및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와 전문강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학교의 여건”으로
하고, “조정·실시한다”를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회에 걸쳐”를 “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
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 시설물 관리, 민원 처리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u>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u> 제18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u>2회에 걸쳐</u> 실시하되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 ----- ----- ----- <u>학교</u> <u>의 여건</u>----- ----- <u>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u> 제18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u> <u>무원</u>-----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2회</u> <u>이상</u> ----- -----.

현행	개정안
※ 비고 : 입양은 「<u>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u>」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u>경조사휴가</u>를 실시할 때 원격지의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 「<u>입양특례법</u>」----- ----- <u>경조사 휴가</u>----- ----- 더할 -----.

二 예 산 안 二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지사, 2017. 3. 3)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1. 주요내용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748,625,000	100.00%	7,437,866,000	100.00%	310,759,000 4.18%
일반회계	7,047,941,000	90.96%	6,751,100,000	90.77%	296,841,000 4.40%
특별회계	700,684,000	9.04%	686,766,000	9.23%	13,918,000 2.03%
기타특별회계	700,684,000	9.04%	686,766,000	9.23%	13,918,000 2.0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58,677,369	5.92%	455,902,000	6.13%	2,775,369 0.61%
치수사업특별회계	8,377,686	0.11%	3,420,000	0.05%	4,957,686 144.9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898,086	0.05%	1,563,000	0.02%	2,335,086 149.4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2,820,399	1.20%	96,345,000	1.30%	△3,524,601 △3.6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281,703	0.43%	34,694,000	0.47%	△1,412,297 △4.07%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10,027,757	0.13%	10,000,000	0.13%	27,757 0.28%
소방안전특별회계	93,601,000	1.21%	84,842,000	1.14%	8,759,000 10.32%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748,625,000	100.00 %	7,437,866,000	100.00 %	310,759,000	4.18%
100	지방채수입	1,751,000,000	22.60 %	1,751,000,000	23.54 %	0	0.00%
110	지방채	1,751,000,000	22.60 %	1,751,000,000	23.54 %	0	0.00%
200	세외수입	131,454,316	1.70 %	121,316,357	1.63 %	10,137,959	8.36%
210	경상적세외수입	30,503,737	0.39 %	30,503,400	0.41 %	337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950,579	1.30 %	90,812,957	1.22 %	10,137,622	11.16%
300	지방교부세	883,978,009	11.41 %	834,100,000	11.21 %	49,878,009	5.98%
310	지방교부세	883,978,009	11.41 %	834,100,000	11.21 %	49,878,009	5.98%
500	보조금	4,181,938,357	53.97 %	4,103,153,957	55.17 %	78,784,400	1.92%
510	국고보조금등	4,181,938,357	53.97 %	4,103,153,957	55.17 %	78,784,400	1.92%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254,318	10.33 %	628,295,686	8.45 %	171,958,632	27.37%
710	보전수입등	315,114,324	4.07 %	152,172,000	2.05 %	162,942,324	107.08%
720	내부거래	485,139,994	6.26 %	476,123,686	6.40 %	9,016,308	1.89%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748,625,000	100.00 %	7,437,866,000	100.00 %	310,759,000	4.18 %
010 일반공공행정	1,018,024,071	13.14 %	932,791,764	12.54 %	85,232,307	9.14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263,749,591	3.40 %	242,491,740	3.26 %	21,257,851	8.77 %
050 교육	77,255,376	1.00 %	76,676,376	1.03 %	579,000	0.76 %
060 문화및관광	539,077,419	6.96 %	493,574,943	6.64 %	45,502,476	9.22 %
070 환경보호	554,779,195	7.16 %	547,334,229	7.36 %	7,444,966	1.36 %
080 사회복지	2,533,750,808	32.70 %	2,497,233,231	33.57 %	36,517,577	1.46 %
090 보건	110,800,982	1.43 %	103,446,244	1.39 %	7,354,738	7.11 %
100 농림해양수산	1,051,139,199	13.57 %	1,036,643,453	13.94 %	14,495,746	1.40 %
110 산업 · 중소기업	202,088,674	2.61 %	192,456,773	2.59 %	9,631,901	5.00 %
120 수송및교통	356,957,053	4.61 %	317,983,617	4.28 %	38,973,436	12.26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460,910,829	5.95 %	410,802,351	5.52 %	50,108,478	12.20 %
150 과학기술	35,711,640	0.46 %	33,392,640	0.45 %	2,319,000	6.94 %
160 예비비	67,511,000	0.87 %	85,658,700	1.15 %	△18,147,700	△21.19 %
900 기타	476,869,163	6.15 %	467,379,939	6.28 %	9,489,224	2.03 %

二 동 의 안 二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도지사, 2017. 3. 3)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2017. 3. 3)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1.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1-3지구)
- 사업규모 : 149,173m²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근 거 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사 업 비 : 약 290억원(보상비 133, 조성비 등 108, 기타 49)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1. 주요내용

□ 취득재산 70,424,791천원

- 토지 : 7,545㎡ 866,932천원(4건)
- 건물 : 22,879㎡ 69,557,859천원(17건)

○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유치원 부지 매입(2건)

- | | | |
|-------------|-----------------|-----------|
| - (가칭)예천유치원 | 450㎡ (136평) | 14,850천원 |
| - (가칭)울진유치원 | 5,250㎡ (1,588평) | 670,415천원 |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2건)

- | | | |
|------------|---------------|-----------|
| - 산양초등학교 | 1,147㎡ (347평) | 71,802천원 |
| - 점촌중앙초등학교 | 698㎡ (211평) | 109,865천원 |

○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유치원 건물 취득(2건)

- | | | |
|-------------|--------------|-------------|
| - (가칭)예천유치원 | 3,203㎡(969평) | 9,750,435천원 |
| - (가칭)울진유치원 | 2,209㎡(668평) | 5,777,209천원 |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13건)

- 죽변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680㎡(508평)	5,000,000천원
-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473㎡(445평)	4,000,169천원
- 동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855㎡(258평)	2,690,365천원
- 풍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	822㎡(248평)	2,757,000천원
- 양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969㎡(293평)	3,610,639천원
- 도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969㎡(293평)	3,462,089천원
- 동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874㎡(264평)	2,452,871천원
- 산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850㎡(257평)	2,260,678천원
- 점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850㎡(257평)	2,230,000천원
- 현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822㎡(248평)	2,146,456천원
- 임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822㎡(248평)	2,969,921천원
- 남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822㎡(248평)	2,221,127천원
- 은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759㎡(229평)	2,087,900천원

○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중심 역할을 위한 건물 취득(1건)

- 청도공공도서관	2,500㎡(756평)	9,691,000천원
-----------	--------------	-------------

○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물 취득(1건)

- (가칭)경북 남부권역 교육지원센터	2,400㎡(726평)	6,450,000천원
----------------------	--------------	-------------

□ 처분재산 16,052,999천원

- 토 지 : 38,878㎡ 11,342,118천원(4건)
- 건 물 : 17,076㎡ 4,412,361천원(4건)
- 공작물 : 37식 218,661천원(3건)
- 입목죽 : 619주 79,859천원(4건)

○ 구청사 매각(1건)

- 경상북도교육청 구청사 6,971㎡(2,108평) 7,255,556천원

○ 폐교재산 매각(3건)

- (구)포항중앙초등학교 13,584㎡(4,109평) 8,234,478천원
- (구)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장 7,857㎡(2,376평) 284,989천원
- (구)온정초등학교 선미분교장 10,466㎡(3,165평) 277,976천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재산 11,253,383천원

- 건물: 5,547㎡ 11,253,383천원(1건)

○ 취득재산 변경(1건)

- 현곡초등학교 건물

당초 2,592㎡(784평) 4,355,052천원(2017년 정기분)

변경 5,547㎡(1,678평) 11,253,383천원(6,898,331천원,
158% 상승)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7. 3. 2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재산 2건과 처분 재산 1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 (가칭)경북 남부권역 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건물 2,400㎡) 삭제
 - (가칭)예천유치원(신설) 취득의 건(토지 450㎡, 건물 3,203㎡) 삭제
 - (구)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장(폐교) 처분의 건(토지 7,857㎡, 건물 582㎡, 공작물 12식, 입목죽 91주) 삭제

3.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재산

가. 취득 재산(15개 기관) : 18건(24,371㎡), 542억 950만 6천원

- 토지 3건(7,095㎡), 8억 5,208만 2천원
- 건물 15건(17,276㎡), 533억 5,742만 4천원으로

【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 】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계	15개 기관	토지	18건	24,371	54,209,506	
토지		건물	3건	7,095	852,082	
건물			15건	17,276	53,357,424	
1	죽변 고등학교	건물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219	1,680	5,000,000	기숙사 증축
2	경북기계 급속고등학교	건물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42	1,473	4,000,169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3	동방 초등학교	건물	경주시 동방동 151	855	2,690,365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4	풍산 초등학교	건물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	822	2,757,000	다목적강당 개축
5	양포 초등학교	건물	구미시 옥계동 570	969	3,610,639	다목적강당 증축
6	도량 초등학교	건물	구미시 도량동 106	969	3,462,089	다목적강당 증축
7	동로 초등학교	건물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155-2	874	2,452,871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8	산양 초등학교	토지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732-2	1,147	71,802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 취득
		건물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72	850	2,260,678	다목적강당 증축

일련 번호	제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9	점촌중앙 초등학교	토지	문경시 점촌동 499-2	698	109,865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 취득
		건물	문경시 점촌동 424-1	850	2,230,000	다목적강당 증축
10	현홍 초등학교	건물	경산시 압량면 현홍리 653	822	2,146,456	다목적강당 증축
11	임당 초등학교	건물	경산시 임당동 443-2	822	2,969,921	다목적강당 증축
12	남성 초등학교	건물	경산시 평산동 164	822	2,221,127	다목적강당 증축
13	청도 공공도서관	건물	청도군 청도읍 교수리 508	2,500	9,691,000	청도공공도서관 개축
14	은풍 초등학교	건물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214	759	2,087,900	다목적강당 증축
15	(가칭) 울진유치원	토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56 외 14필지	5,250	670,415	(가칭)울진유치원 신설 부지 취득
		건물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56 외 14필지	2,209	5,777,209	(가칭)울진유치원 신설 건물 취득

나. 처분 재산(3개 기관) : 11건, 157억 6,801만원

- 토 지(3건) : 31,021㎡, 112억 2,209만 8천원
- 건 물(3건) : 16,494㎡, 43억 4,264만 1천원
- 공작물(2건) : 25식, 1억 6,449만 5천원
- 입목죽(4건) : 528주, 3,877만 6천원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처분재산 목록】

(단위:㎡, 식, 종, 천원)

기관명	폐교 연도	소재지	종별	지목·구조	면적(㎡)	금액(천원) (공시지가기준)
계		3개 기관	계 11건 토지 3건 건물 3건 공작물 2건 입목죽 3건			15,768,010 11,222,098 4,342,641 164,495 38,776
경상북도 교육청 (구)청사	2016년	대구 북구 산격동 1008	토지	대 (2필지)	6,971㎡	4,768,164
			건물	본관동 외 (8개동)	9,914㎡	2,377,823
			공작물	담 외 (5종)	8식	95,450
			입목죽	향나무 외 (7종)	369주	14,119
			소 계			7,255,556
(구) 포항중앙 초등학교	2017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	토지	학교용지 외 (13필지)	13,584㎡	6,239,977
			건물	교사동 외 (8개동)	5,991㎡	1,903,952
			공작물	교문 외 (15종)	17식	69,045
			입목죽	느티나무 외 (17종)	125주	21,504
			소 계			8,234,478
(구)온정 초등학교 선미 분교장	1999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623	토지	학교용지 외 (6필지)	10,466㎡	213,957
			건물	교사동 외 (2개동)	589㎡	60,866
			입목죽	백일홍 외 (6종)	34주	3,153
			소 계			0

다. 변경 재산(1개 기관) : 1건, 112억 5,338만 3천원

▪ 건 물(1건) : 5,547㎡, 112억 5,338만 3천원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취득변경재산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계 산 표 시			변 경 내 역				변경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구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증감 내역	
1	현곡 초등학교	건물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120	범위 면적 금액	12학급 2,592㎡ 4,355,052	24학급 5,547㎡ 11,253,383	12학급 2,955㎡ 6,898,331	건물 취득 기준 가격이 당초 대비 30% 초과 증가

二 결 의 안 二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 2017. 3. 17)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3월 30일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상임위원회명	출신지역	성 명	비 고
기획경제위원회	구 미	이 태 식	위원장
"	경 산	윤 성 규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문 경	박 영 서	
문화환경위원회	경 주	이 진 락	부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성 주	이 수 경	
"	의 성	최 태 립	
건설소방위원회	영 천	한 혜 련	
7명			

의정 활동 보고서

(제290회 · 제291회 임시회)



2017. 5. 인쇄 / 2017. 5.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